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합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란?

우수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

2.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3. 적용대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4.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할인율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산재보험료를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 적용)	

5.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신청서』(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첨부)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제출

※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

6.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의 신청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보험료율에 반영 (근로복지공단)
---------------------	--------------------	--------------------------	----------------------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인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